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70호
----------	-------

2018. 01. 31.(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1월 09일

○ 회부일자 : 2018년 01월 12일

다. 상정일자 : 2018년 01월 23일

○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출산·양육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조례명 개정

○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한 적령기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다자녀 우대카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 (현행) ‘다자녀 우대카드’ → (변경) ‘아이사랑 우대카드’
- ‘출산장려 종합계획’ 용어 변경(안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 (현행) ‘출산장려 종합계획’ → (변경)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 저출산대책위원회 성별비율 관련 문구 수정(안 제15조 제3항)
- 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근거 신설
 - 안 제5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제7호
 - 안 제7조(지원대상) 제1항 제4호
 - 안 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제1항 제4호
 - 안 제14조(포상) 제3호
 - 안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충청북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한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비혼·만혼 등 결혼기피 풍조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결혼장려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안 제2조에서 기존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카드발급 대상을 기존에는 두 자녀 이상 가정(12세 이하 자녀)에서 한자녀 가정일지라도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변경함

- ※ 동 조례 제11조 제3항에 구체적 발급대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충북도는 두 자녀 이상이며 최소 연령 자녀가 12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농협을 통해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 발급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카드 명칭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타 시·도의 카드 발급 대상을 살펴보면, 최소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막내아의 연령만 12세~24세까지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 우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였음.
- 이는 자녀 양육지원의 강화에 방점을 둔 조치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 우대 기능이 희석될 소지가 있음.

《전국 시·도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 기준》

최저연령 자녀 기준	지역명 (카드발급 대상 기준 자녀 수)
최저연령 자녀 12세	대전(3명 이상), 충남(2명 이상), 現 충북(2명 이상)
최저연령 자녀 13세	서울(2명 이상), 인천(3명 이상), 경남(3명 이상)
최저연령 자녀 15세	광주(3명 이상), 경기(2명 이상)
최저연령 자녀 17세	세종(2명 이상)
최저연령 자녀 18세	부산(3명 이상), 경북(3명 이상)
최저연령 자녀 24세	강원(2명 이상)
연령제한 없음	울산(2명 이상), 제주(3명 이상)

- 또한, 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카드 명칭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은 ‘다자녀 우대카드’는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문장으로,
-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셋째, 안 제5조에서 기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출산장려종합계획’ 명칭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라 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출산장려종합계획’은 상위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도 자체 추진사업으로 명칭 변경은 가능함.
- 넷째, 본 개정안에서는 ‘적령기 결혼 장려’를 사업, 포상, 위원회 기능 등에 포함시켰고, 이를 위한 사업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음.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 ‘적령기 결혼장려 시책’ 포함 (안 제5조)
- 예산 지원 대상 사업에 ‘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포함 (안 제7조)
- 민간단체 지원 대상에 ‘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 포함 (안 제13조)
- 포상 대상에 ‘적령기 결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포함 (안 제14조)
-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기능에 ‘적령기 결혼 환경 조성’ 포함 (안 제16조)
- 정부에서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결혼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 ‘결혼 장려 사업(행복결혼공제지원금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행복결혼공제지원금’사업은 2018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임. (당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다만, 시책수립, 예산지원(비용추계서에 제시된 ‘행복결혼공제 지원금’ 사업), 포상 등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결혼 적령기’에 대한 성별, 연령 중심의 구체적 용어 정의를 통해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 국내 통계상 여성의 경우 결혼 적령기는 가임기간인 15세~49세의 범위 내로 봄
- 그러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정의는 현재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고, 기존 법령에서도 명확한 용어 정의가 존치하지 않는 관계로 현 시점에서 조례에 이를 정의할 경우 적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지가 있고, 정의하지

않을 경우 또한 조례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에 사용된 ‘적령기’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요구되는 사항임. 따라서 협의 규정에 대한 충북도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그 경과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잘못 기재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고,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 적용 대상 범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제7호, 안 제7조제1항제4호,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 “적령기 결혼장려” 를 “결혼장려” 로 수정함
- 안 제11조 제1항 중
 - “다자녀 우대카드” 를 “아이사랑 우대카드” 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를 “다음 각 호의” 로 수정함
- 안 제14조제3호, 안 제16조제1호 중
 - “적령기 결혼” 을 “결혼” 으로 수정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호
----------	----------

제안연월일 : 2018년 1월 23일

제안자 : 이양섭 의원 외

□ 수정이유

- 잘못 기재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고,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 적용 대상 범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제7호, 안 제7조제1항제4호,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 “적령기 결혼장려” 를 “결혼장려” 로 수정함
- 안 제11조 제1항 중
-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함
- 안 제14조제3호, 안 제16조제1호 중
- “적령기 결혼” 을 “결혼”으로 수정함.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적령기 결혼장려 ‘를 ’ 결혼장려 ‘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적령기 결혼장려 ‘를 ’ 결혼장려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자녀 우대카드” 를 “아이사랑 우대카드”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를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적령기 결혼” 을 “결혼” 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적령기 결혼” 을 “결혼”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적령기 결혼” 을 “결혼”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② 출산장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p>	<p>제5조(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②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u>적령기 결혼장려</u>를 위한 시책</p>	<p>제5조(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②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u>결혼장려</u>를 위한 시책</p>
<p>제7조(지원 대상) ① (생략) <신 설> 4. (생략)</p>	<p>제7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4. <u>적령기 결혼장려</u>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5. (기존 제4호와 같음)</p>	<p>제7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4. <u>결혼장려</u>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5. (기존 제4호와 같음)</p>
<p>제11조(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1.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2. 각종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면제 또는 할인 혜택 등</p>	<p>제11조(아이사랑 우대 카드발급) ① 도지사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u>다자녀우대카드</u>를 발급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u>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1. 아이사랑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2. 각종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면제 또는 할인 혜택 등</p>	<p>제11조(아이사랑 우대 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u>아이사랑우대카드</u>를 발급하여 <u>다음 각 호의</u>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1. 아이사랑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2. 각종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면제 또는 할인 혜택 등</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생략) 1.~3.(생략) <신 설>	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적령기 결혼장려</u> 에 관한 사업	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결혼장려</u> 에 관한 사업
제14조(포상) (생략) 1.~2.(생략)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제14조(포상)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소속 임직원 및 지역 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u>적령기 결혼</u> 분위기 조성 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제14조(포상)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소속 임직원 및 지역 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u>결혼</u> 분위기 조성 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자녀의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정책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u>적령기 결혼</u> 및 자녀 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정책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현 행과 같음) 1. <u>결혼</u> 및 자녀의 출산 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라 한다.

제5조의 제목“(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

제6조 중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11조의 제목 “(다자녀 우대 카드발급)” 을 “(아이사랑 우대 카드발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자녀 이상” 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으로, “다자녀 우대카드” 를 “아이사랑 우대카드” 로,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 을 “혜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자녀 우대카드” 를 “아이사랑 우대카드”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

제14조제3호 중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을 “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결혼 분위기 조성” 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자녀의 출산” 을 “결혼 및 자녀의 출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충청북도 <u>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	(제명) 충청북도 <u>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생략) 1.~4.(생략) 5. <u>다자녀</u> 우대카드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가 농협을 통하여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u>아이사랑</u> 우대카드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가 농협을 통하여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말한다.
제5조(<u>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u>출산장려 종합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출산장려 종합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u> 2.~6.(생략) <신설> 7.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5조(<u>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u>저출산 대응 종합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저출산 대응 종합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u> 2.~6.(현행과 같음) 7. <u>결혼장려를 위한 시책</u> 8. (기존 제7호와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u>출산장려 종합계획</u>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u>저출산 대응 종합계획</u>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 대상) ①(생략) <u><신설></u> 4. (생략)</p>	<p>제7조(지원 대상) ①(현행과 같음) 4. <u>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u> 5. (기존 제4호와 같음)</p>
<p>제11조(다자녀 우대 카드발급) ① 도지사는 <u>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u> 1. <u>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u></p>	<p>제11조(아이사랑 우대 카드발급) ① 도지사는 <u>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아이사랑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u> 1. <u>아이사랑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u></p>
<p>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생략) 1.~3.(생략) <u><신설></u> 4. <u>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u></p>	<p>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결혼장려에 관한 사업</u> 5. (기존 제4호와 같음)</p>
<p>제14조(포상) (생략) 1.~2.(생략) 3. <u>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u></p>	<p>제14조(포상)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u>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결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u></p>
<p>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생략) ③ 위원은 <u>도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관련 전문가 등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한다.</u></p>	<p>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u>도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관련 전문가 등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u>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u></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u>결혼 및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u></p>

관련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령기 결혼을 장려하고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운영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400명

나. 추 계 결 과 : '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4,4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21%, 시군 21%, 기업 29%, 근로자 29%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출	14,400	2,880	2,880	2,880	2,880	2,880
행 복 결 혼 공 제 지 원 금	14,400	2,880	2,880	2,880	2,880	2,880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